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8
----------	-----

제출년월일 : 1999년 12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법률 제5947호('99. 3. 31공포)에 의한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에 의거 비료판매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 평창군사무위임조례 [별표]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위임사무 삭제
○ 비료판매업 등록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일련번호란중 제19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9	○비료판매업 등록	○ 비료관리법 제13조	<삭제>	<삭제>	<삭제>

관 계 법 령

第24編 農 業 第 5 章 農 政 肥料管理法

● 肥料管理法

소관부처 : 농림부

全文改正 1995·12·6 法律第5019號
改正 1996·8·8 法律第5153號(政府組織法)
1997·12·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の施行에 따른 公認會計士法 등의 整備에 관한 法律)
1999·3·31 法律第5947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肥料의 品質을 보전하고 원활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통하여 農業生産力을 유지·增進시키며 農業環境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6·8·8, 99·3·31>

1. “肥料”라 함은 植物에 營養을 주거나 植物의 栽培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化學的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物質과 植物에 營養을 주는 物質을 말한다.
2. “普通肥料”라 함은 副産物肥料의의 肥料로서 公定規格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副産物肥料”라 함은 農業·林業·畜産業·水産業·製造業 또는 販賣業을 영위하는 過程에서 나온 副産物, 人糞尿, 飲食物類廢棄物, 土壤微生物製劑(土壤酵素製劑를 포함한다), 土壤活性化劑 등 肥料性能이 있는 物質로서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公定規格”이라 함은 農林部長官이 그 規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肥料에 대하여 그 主成分의 最少量 또는 含有할 수 있는 有害成分의 最大量 기타 主成分의 效能維持에 필요한 附加成分의 含有量 등 肥料의 品質維持를 위하여 農林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規格을 말한다.
5. “保證成分”이라 함은 肥料業者가 生産·輸入·輸出 또는 販賣하는 肥料에 대하여 그 肥料가 含有하고 있는 主成分의 最少量을 百分率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肥料業者”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가. 肥料生産業者 : 肥料를 生産(製造·配合·加工 또는 採取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

나. 肥料輸入業者: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

다. 肥料輸出業者: 肥料의 輸出을 業으로 하는 者

라. 肥料販賣業者: 肥料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

第3條 (적용의 예외등) ①肥料를 工業用 또는 飼料用으로 供給하기 위하여 生産·輸入 또는 販賣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3·31>

②農業·林業·畜産業 또는 水産業을 영위하는 者가 그 營爲過程에서 나온 副産物肥料를 다른 肥料의 原料로 販賣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販賣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3·31>

③削除 <99·3·31>

第4條 (公定規格의 設定등) ①農林部長官은 公定規格을 設定·변경 또는 廢止하거나 副産物肥料를 지정 또는 廢止할 수 있다. <改正 96·8·8>

②公定規格의 設定·변경 또는 廢止나 副産物肥料의 지정 또는 廢止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그 設定등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6·8·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定規格設定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肥料公定規格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農林部長官은 肥料의 公定規格을 設定·변경 또는 廢止하거나 副産物肥料를 지정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30日전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 또는 지정의 告示가 되지 아니한 肥料를 生産·輸入하여 農業用으로 販賣하고자 하는 者는 公定規格의 設定이나 副産物肥料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公定規格이 設定되거나 副産物肥料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生産·輸入하여 販賣할 수 없다. 다만, 試驗用 또는 研究用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第3項의 肥料公定規格審議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추 107)

第5條 (需給計劃) ①農林部長官은 每年度 開始전에 當해年度의 肥料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6·8·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需給計劃은 肥料의 生産·輸出·輸入등 需給狀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및 ④削除 <99·3·31>

第6條 (農業環境保護 및 肥料開發) 農業環境 및 土壤을 보호하고 農業生産性 增大와 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地域別·作物別 肥料의 開發促進과 品質改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肥料의 供給) ①農林部長官은 肥料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 하여금 肥料를 供給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②農業協同組合中央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를 供給하는 경우에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肥料의 滅失·毀損·成分低下 및 포장의 파손등의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그 損失額을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肥料計定에 全額 賠償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로 인하여 損失이 발생한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이 事故당시의 諸般事情을 참작하여 賠償金額을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6·8·8>

第8條 (肥料計定の 設置 및 財政支援) ①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를 供給하는 경우에는 自體의 經理와 구분하여 肥料計定을 따로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肥料를 供給하는 경우에 그 肥料의 供給으로 인하여 缺損額이 생긴 때에는 이를 政府豫算에서 第1項의 肥料計定에 補填한다.

③第2項의 缺損額은 豫算會計法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따라 一般會計 歲計剩餘金으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9條 削除 <99·3·31>

第10條 (危害性肥料등의 輸入制限) ①農林部長官은 重金屬이 含有되어 있거나 病害蟲이 流入되어 土壤環境 및 植物에 중대한 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普通肥料중 有機質肥料 및 副產物肥料와 그 原料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6·8·8, 99·3·31>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대한 危害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普通肥料중 有機質肥料 및 副産物肥料와 그 原料에 관하여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危害性의 기준 및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肥料生産業의 登錄) ①肥料를 生産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廢棄物을 肥料로 再生處理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肥料의 種類別로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②削除 <99·3·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錄에 필요한 施設 기타 登錄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副産物肥料의 生産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改正 99·3·31>

④肥料生産業者는 登錄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廢業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條例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3·31>

第12條 (肥料輸入業의 申告) ①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②肥料輸入業者가 廢業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輸入業을 申告하는 者는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第13條 (營業의 承繼) ①肥料生産業者·肥料輸入業者 또는 肥料販賣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併이 있을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第35條중 “第18條第1項”을 “第17條第2項”으로, “農林部長官 또는 道知事”를 “道知事”로 한다.

第36條第1項第2號를 削除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配合飼料 또는 補助飼料製造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配合飼料 또는 補助飼料의 製造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9條第1項의 改正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飼料管理法 改正理由

飼料調節團體의 지정 및 輸入飼料 등의 販賣方法 指定制度 등을 廢止하고, 配合飼料製造業의 登錄에 관한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移讓하는 등 實效性이 없거나 과도한 行政規制를 현실에 맞게 整備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一定飼料를 輸出·輸入, 備蓄·供給하도록 하는 備태적인 飼料調節團體 指定制度를 廢止하고, 飼料關聯團體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5條).

나. 補助飼料 등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도록 함(法 第5條의3).

다. 政府管理糧穀 또는 輸入糧穀副産物인 飼料 등에 대한 販賣方法 指定制度를 廢止함(現行 第6條 削除).

라. 農林部長官의 配合飼料製造業 登錄權限을 市·道知事에게 移讓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도모함(法 第9條).

※시행일 : 公포후 3월이 경과한 날(1999. 7. 1.)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印

1999년 3월31일

국무총리 김중필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김성훈

◎法律 第5,947號

肥料管理法中改正法律

肥料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나H중 “第11條”를 “第12條”로, “登錄”을 “申告”로 하고, 同條第6號라H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肥料販賣業者 : 肥料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

第3條第1項 但書를 削除하고, 同條第2項중 “販賣하는 경우에는”을 “販賣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며, 同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5條第3項 및 第4項를 각각 削除한다.

第9條를 削除한다.

第10條第1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을 “産業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11條의 題目 “(肥料의 生産業 및 輸入業登錄)”을 “(肥料生産業의 登錄)”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①肥料을 生産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廢棄物 管理法에 의한 廢棄物을 肥料로 再生處理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肥料의 種類別로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 登錄하여야 한다.

第11條第3項중 "肥料의 生産業 및 輸入業"을 "肥料生産業"으로 하고, 同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5項중 "肥料의 生産業 및 輸入業登錄"을 "肥料生産業의 登錄"으로, "農林部令 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을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條例가 정하는"으로 한다.

④肥料生産業者는 登錄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廢業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2條의 題目 "(肥料의 販賣業申告)"을 "(肥料輸入業의 申告)"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중 "肥料販賣業者가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에는"을 "肥料輸入業者가 廢業한 때에는"으로, "市長·郡守"를 "市·道知事"로 하며, 同條第3項중 "肥料販賣業"을 "肥料輸入業"으로, "地方自治團體"를 "市·道"로 한다.

①肥料을 輸入하여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3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4條第2項에 第4號 내지 第6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肥料의 容器나 포장에 그 效力에 대하여 謾認하기 쉬운 표시를 한 肥料

5. 公定規格에서 정하는 原料외의 物質을 사용하여 製造한 肥料

6. 肥料生産業者 또는 肥料輸入業者외의 者가 生産 또는 輸入한 肥料

第15條 내지 第17條 및 第18條第1項을 각각 削除하며, 第18條第2項중 "農林部長官은"을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第19條 本文중 "農林部長官은"을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第20條第1項 本文중 "主務部長官은 肥料生産業者 또는 肥料輸入業者가"를 "市·道知事는 肥料生産業者가"로 하고, 同項第1號중 "肥料의 生産業 또는 輸入業"을 "肥料生産業"으로 하며, 同項第3號 및 第4號중 "生産 또는 輸入"을 각각 "生産"으로 하고, 同項第6號를 削除하며, 同項第7號중 "生産 또는 輸入"을 "生産"으로 하고, 同項第9號 내지 第11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20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市·道知事は 肥料輸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營業所의 閉鎖 또는 3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4號 또는 第7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營業所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肥料輸入業의 申告를 한 때
2.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有害成分 最大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한 때
3.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主成分 最少含有量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한 때
4.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5.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된 保證成分量에 미달한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한 때
6.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7.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그 營業을 한 때

第21條第1項중 “主務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第20條第1項第8號 내지 第11號의 1”을 “第20條第1項第7號·第8號 또는 第2項第6號”로 한다.

第21條第3項중 “主務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國稅滯納處分”을 “地方稅滯納處分”으로 하고, 同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22條중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를 “市·道知事”로, “第20條”를 “第20條第1項 또는 第2項”으로, “肥料生産業者 또는 肥料輸入業者”를 “肥料生産業者”로, “肥料販賣業者의 販賣營業所”를 “肥料輸入業者의 營業所”로 한다.

第23條第1項 本文중 “肥料의 生産業 및 輸入業의 登錄”을 “肥料生産業의 登錄”으로 하고, 同項第2號중 “肥料의 生産業 또는 輸入業登

錄”을 “肥料生産業의 登錄”으로, “肥料의 生産業 또는 輸入業”을 “肥料生産業”으로 하며, 同條第2項중 “販賣業”을 “輸入業”으로, “6月”을 “1年”으로, “販賣業申告”를 “輸入業申告”로 한다.

第24條第1項중 “主務部長官은”을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農林部長官은 肥料의 團束長”을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肥料의 品質管理 등을 위하여”로 한다.

第25條를 削除한다

第26條중 “主務部長官”을 “農林部長官”으로, “農村振興廳長과 特別市長, 廣城市長 또는 道知事”를 “農村振興廳長”으로 한다

第27條第2號를 削除하고, 同條第3號중 “生産 또는 輸入”을 “生産”으로, “肥料의 販賣業申告”를 “申告”로, “肥料를 販賣한 者”를 “肥料를 輸入하여 販賣한 者”로 하며, 同條第7號를 削除하고, 同條에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0.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閉鎖命令 또는 營業停止處分을 받고도 營業을 한 者

第28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號 내지 第6號를 각각 削除한다.

2. 第14條第2項第1號·第2號 및 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30條第1號 및 第2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條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試料採取 또는 資料 및 시료의 提出要求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第3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過怠料) 第11條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32條第1項중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를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肥料生産業 또는 輸入業의 登錄 또는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의 生産業 또는 輸入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11條 및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肥料生産業의 登錄 또는 肥料輸入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에게 肥料生産業을 登錄한 者는 이 法 施行 후 3월이내에 관할 市·道知事에게 肥料生産業登錄證의 제교부를 申請하여야 한다.

◇肥料管理法 改正理由

肥料産業의 行政規制를 廢止 또는 緩和하고, 地方化時代에 부응하여 일부 行政權限을 移讓하는 한편, 現行 規定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肥料生産·販賣·輸出 및 輸入命令制와 肥料最高價格 指定制

를 각각 廢止함(現行 第5條第3項·第4項 및 第9條 削除).

나. 肥料輸入業을 登錄制에서 申告制로 緩和하고, 肥料販賣業의 申告制를 廢止함(法 第11條 및 第12條).

다. 工業用 또는 飼料用肥料의 農業用으로의 販賣禁止·肥料의 보증표시 부정사용금지, 肥料의 異物質混入禁止 및 허위선전금지 등을 廢止하고, 肥料의 品質管理 기준을 보완함(法 第3條, 第14條 내지 第17條).

※시행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1999. 7. 1.)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函

1999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김성훈
농림부장관

◎法律 第5,948號

農地法中改正法律

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本文중 “3萬제곱미터”를 각각 “5萬제곱미터”로 하고, 同項 第2號를 削除하며, 同條第2項중 “3萬제곱미터”를 “5萬제곱미터”로 한다.

第8條第1項중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을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の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